새로운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주 관광비즈니스 창업 및 기업 육성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최근 관광시장 다변화에 대응하고 제주의 혁신적인 관광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관광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주 관광비즈니스 창업 및 기업 육성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8. 3. 30.

제주관광공사 사장

1 모집개요

○ 공 모 명 : **『제주 관광비즈니스 창업 및 기업 육성사업』** 대상자 모집

○ 공고기간 : 2018. 3. 30.(금) ~ 4. 30.(월)

* 신청기간 : 2018. 4. 16.(월) ~ 4. 30.(월), 17시까지

○ 신청자격 : 도내 예비창업팀과 창업 3년 이내 기업(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중소기업 법인)

○ 선 정 : 총 10개 내외 팀(기업)

○ 지원사항 : 사업화 자금 지원, 교육 및 컨설팅

○ 모집주제 : 제주 기반 혁신적인 관광비즈니스 * 세부내용 참고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각종 증빙서류 등

○ 신청방법 : 방문제출

○ 심사 및 발표일정

- (심사) 5월 초~중순 / (발표) 5월 중순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도내 예비창업팀'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도내 기업'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도내 예비창업팀

-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법인 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도내 예비창업팀'
- 예비창업팀이 2인 이상의 경우,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
- 팀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
- 이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접수마감일까지 제주도 내 주소지로 변경 완료되어야 함

* 예비창업팀은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완료일 30일 전까지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폐업 이력을 보유한 자가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법인 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예비창업자에 해당함

○ 창업 후 3년 이내(2015. 3. 31 이후 창업) 도내 기업(개인 또는 법인)대표자

*【참고1】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에서 '창업기업'이어야 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을 기준
- 업력 3년을 초과한 기업(개인·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 경험을 보유한 경우

* '18. 3. 29. 이전 사업자(개인·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을 판단하여 3년 이하 창업기업은 신청 가능

**【참고1】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선정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업종 무관(단, 공공질서에 반하는 아이템은 신청 불가)
- 이주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주소지가 접수마감일까지 제주도 내 주소지로 변경 완료되어야 함

<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에 의해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예외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3 모집주제

제주 기반 혁신적인 관광비즈니스 *외국인 대상 서비스 포함

◈ 다양한 ICT기반의 혁신기술 및 새로운 아이디어의 접목을 통해 현 제주관광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성 개선

◈ 미래 관광산업의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거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

※ **유의사항**

- 기존 도내에 출시되어 판매 중인 유사 서비스 및 단순 체험프로그램 제외
- 여행사 관광상품 제외
- ICT 기반일 경우 제주를 포함하는 서비스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정보제공 기능 등 단순 서비스는 제외
- 체험형 사업일 경우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증 취득이 완료되어야 함
- 타 기관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창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관광비즈니스 창업 및 기업육성 사업』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성과 및 차별성을 사업계획서 상 명확히 기술 단, 내부 심사기준 및 규정에 의해 지원자금이 축소 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4 지원사항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2월 중순까지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교육 및 컨설팅

<table>
<tr><th>지원내역</th><th>지원내용</th><th>비 고</th></tr>
<tr><td>사업화
자금</td><td>☞ 사업 아이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지원금은 팀(기업)당 최대 3,200만원
* 선정시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 선정 후 사업계획 보완 컨설팅 단계에서 지원금 일부 조정

☞ 사업비 구성 : 지원금 80% + 자부담금 20%
<table><tr><th rowspan="2">지원금</th><th colspan="2">자부담금</th></tr><tr><th>현금</th><th>현물</th></tr><tr><td>총 사업비의
80%이하</td><td>총 사업비의
10% 이상</td><td>총 사업의
10%이하</td></tr></table>*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참고 2】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참조

※ 사업비 구성 예시(지원금 최대의 경우)
<table><tr><th rowspan="2">총 사업비</th><th rowspan="2">지원금</th><th colspan="2">자부담금</th></tr><tr><th>현금</th><th>현물</th></tr><tr><td>4,000만원</td><td>3,200만원</td><td>400만원</td><td>400만원</td></tr><tr><td>100%</td><td>80%</td><td>10%</td><td>10%</td></tr></table></td><td>-</td></tr>
<tr><td>교육 및
컨설팅</td><td>☞ 비즈니스전략, 관광 마케팅 등 교육
맞춤형 비즈니스 컨설팅 및 멘토링</td><td>사업화 자금 외
별도비용으로
지원</td></tr>
</table>

5 신청 · 접수

가. 신청기간 : 2018. 4. 16.(월) ~ 4. 30.(월), 17시까지

나. 신청방법 : 방문제출

* 제출처 :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제주웰컴센터 2층)

다.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서식1)
-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 타기관 유사 지원사업 수혜 현황 (서식3) * 해당자에 한함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서식4)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내 여권 중 1개)
  * 서류심사 통과시 제출
- 팀보유 역량 증빙서류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하여 최종선정 이후 제출

○ 예비창업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현재 사업자 등록 여부확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고용실적증빙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로 서류심사 통과시 제출
- 매출실적증빙서류(15년~17년) : 연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서류심사 통과시 제출

6 심사 · 선정

가. 선정심사 * 전문가 심사위원단 구성하여 심사

① 1차 서류 심사 (1.5배수 내외 선정)	⇨	② 2차 발표심사 (최종심사)
5월 초		5월 중순

① 1차 서류심사

- 신청자격, 모집주제 반영 및 관련 제외사항 심사
- 사업화 전략, 시장 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팀 보유 역량 심사

② 2차 발표심사(최종심사)

- PT 발표 및 질의응답
- 사업화 전략, 시장 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팀 보유 역량 심사

나. 선정이후 추진절차

사업계획 컨설팅 사업계획 보완	⇨	사업 협약체결 관광공사-선정팀(기업)	⇨	사업화 지원 *중간평가(8월)	⇨	최종평가/ 정산
5월 말		5월 말~6월 초		6월~11월		12월 초~중

○ 최종 선정된 팀(기업)은 사업계획 컨설팅(사업비 조정 포함) 후 사업계획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관광공사-선정팀(기업)간 협약체결

○ 협약 이후 사업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지원기간 중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중간평가 개최

○ 최종평가 개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유의사항

가. 신청 시 유의사항

○ 모집주제 관련 유의사항

- 기존 도내에 출시되어 판매 중인 유사 서비스 및 단순 체험프로그램 제외
- 여행사 관광상품 제외
- ICT 기반일 경우 제주를 포함하는 서비스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정보제공 기능 등 단순 서비스는 제외
- 체험형 사업일 경우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증 취득이 완료되어야 함

○ 타 기관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창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인 경우, 『관광비즈니스 창업 및 기업육성사업』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성과 및 차별성을 사업계획서 상 명확히 기술
단, 내부 심사기준 및 규정에 의해 지원자금이 축소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평가 중 유의사항

○ 발표 평가 시 예비창업팀 본인(대표), 3년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함

○ 서류·발표 평가에서 평가항목별 배점이 항목별 전체 배점의 60% 미만일 경우 종합점수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다.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주관광공사는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고, 보조사업 참여제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집행할 수 있음

8 선정자의 의무

○ 선정팀(기업)은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팀(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예비창업팀은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완료일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선정팀(기업)은 제주관광공사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팀(기업)은 협약완료일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선정팀(기업)은 협약완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9 문의처

○ 제주관광공사 064-740-6000

【참고】 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2.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참고 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기창업자 해당)

○ 창업여부 기준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여부
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가 (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주)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 창업업력 기준

- 업력 3년 초과한 사업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기준일(‘18.3.29) 이전 타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새롭게 창업하는 업종의 업력을 적용

Q, 2010년에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운영 중이던 홍길동씨는『관광비즈니스 창업 및 기업육성사업』모집공고 기준일(‘18.3.29) 이전에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7년 신규 법인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에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
(창업여부) ‘18. 3. 29. 이전 이종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창업으로 인정
(창업업력) 정보서비스업의 업력 1년을 기준으로 판단

【참고 2】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구입비 **(SW, 기기, 비품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SW, 기기,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지원자금 30% 이하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인건비는 해당 사업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에만 지급 가능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기자재임차비)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화 자금 사용 불가 항목 >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선정팀(기업)의 자본적 경비
○ 프로젝트와 관련없는 상근직원(대표 등)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인건비는 해당 사업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에만 지급 가능(전체사업비의 30% 이내)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